

의정활동 보고서

제192회 임시회(2004.10.14 ~ 10.27)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영재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제192회 임시회가
열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추석명절 바쁜 일정 가운데도 비회기 중에 실시한
의원연수회와 지역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0월 8일부터 청주시에서 개최된 제85회
전국체전에서 그동안 선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신
선수단과 임원진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농촌에서는 유례없는 작황으로 풍성한 수확의 기쁨으로 넉넉한 마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농업시장 개방화로 인하여 어려운 농촌 현실이지만, 우리역사의 뿌리인 농업 기반을 확고히 다져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업이 발전되고, 도민의 삶의 질 또한 더욱 풍요로워 지기를 갈망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필요한 폭넓은 자료수집과, 2005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의욕적으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세심한 부분까지 확인·점검하여 도정이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가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내실있는
회기가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지역 곳곳에서는 가을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들 축제를 계기로 도민 모두가 즐겁고 화합 단결
하는 상생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계절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엔
늘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李 哲 雨

차 례

I . 개 황

II . 의사일정

1. 소 집

2. 회 기

3. 활 동

가. 본회의

나. 상임위원회

III . 의안 처리

1. 본회의

2. 상임위원회

IV . 민원 처리

1. 청 원

2. 진 정

가. 접 수

나. 처 리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접수 사항
2. 조례공포 사항
3. 기타 사항

VI. 5분 자유발언

[제1차 본회의 ; 2004.10.14]

1. 건설소방위원회 김기대의원
2. 행정사회위원회 김석호의원
3. 교육환경위원회 박종욱의원

[제2차 본회의 ; 2004.10.27]

1. 교육환경위원회 장미향의원
2. 농수산위원회 박승학의원

부 록

- 조 례 안
 - 1.경상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 2.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승 인 안
 - 1.경상북도와베트남타이응우엔성간자매결연체결안 ..
-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총괄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192회 임시회는 2004년10월14일 개최하여 10월27일 까지 14일간의 회기동안 본회의 2차, 7개 상임위 회의 7차를 개최하였고 포항시의 8개 시·군의 기관 및 시설, 사업장도 현장 확인하였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하여 보면

제1차 본회의는 10월14일(목)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1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휴회 의건을 의결, 이어서 5분 자유발언(김기대·김석호·박종욱의원) 하고 10월15일부터 동월 26일까지 휴회하였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사업장 등에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27일(수)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5분 자유 발언 (장미향·박승학의원)」을 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경상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경상북도립 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와베트남 타이응우옌성간자매결연체결안」을 처리한 후 제192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Ⅱ. 의사일정

1. 소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수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다. 집회 공고일 : 2004. 9. 30

라. 집회일시 : 2004. 10. 14 (목) 11: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04. 10. 14 ~ 10. 27(14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2회 (누계 60회)

○ 상임위원회 : 7회

구분	계	의회 운영	기획	행정 사회	교육 환경	농수산	산업 관광	건설 소방	특별
금회	7	1	1	1	1	1	1		
누계	263	28	27	39	44	28	31	28	38

※ 누계는 제7대 의회 누계

3. 활 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4.10.14(목) 11:00 (제1차)	1. 제192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 5. 5분 자유발언 ○ 김기대의원(성주군, 건설소방위원회) ○ 김석호의원(구미시, 행정사회위원회) ○ 박종욱의원(청송군, 교육환경위원회)	원안가결 " " "
2004.10.27(수) 11:00 (제2차)	1. 5분 자유발언 ○ 장미향의원(상주시, 교육환경위원회) ○ 박승학의원(청송군, 농수산위원회)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7건) 3. 경상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4.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 5. 경상북도와베트남타이응우엔성간자매결연체결안	원안가결 " " "

나.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4.10.27(수) 10:00 (제1차)	○ 제193회경상북도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 2004년도의회사무처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협의건	원안가결 " "

〈기획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4.10.14(목) 13:00 (제1차)	○ 경상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견	원안가결 "
2004.10.18~ 10.20 (3일간)	○ 현지확인 - 정보화마을 - 타 시·도 정보화마을 방문	

〈행정사회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4.10.14(목) 14:00 (제1차)	○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 ○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견	원안가결 "
2004.10.18~ 10.20 (3일간)	○ 현지확인(울릉) -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현장 4개소 -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현장 2개소	

〈교육환경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4.10.14(목) 13:00 (제1차)	○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견	원안가결
2004.10.18~ 10.20 (3일간)	○ 현지확인(상주, 문경, 예천) - 예천예술문화체험장, 문경마성임도사업(구조개량) 문경새재도립공원, 상주한방자원산업화단지, 상주 적십자병원	

〈농수산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4.10.14(목) 13:00 (제1차)	○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견	원안가결
2004.10.19~ 10.21 (3일간)	○ 현지확인(상주, 군위) - 잠사곤충사업장 - 호우피해지역 방문	

〈산업관광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4.10.14(목) 14:00 (제1차)	○ 경상북도와베트남타이응우엔성간자매결연체결안 ○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견	원안가결 "
2004.10.25~ 10.26 (2일간)	○ 현지확인(영양, 봉화) - 유교문화권개발 현장	

〈건설소방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4.10.14(목) 14:00 (제1차)	○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견	
2004.10.18~ 10.21 (4일간)	○ 현지확인 - 영덕 대진3지구 마을정비사업 - 신양교 수해복구사업 - 장기면 우회도로공사 - 포항소방서 : 화재취약지구, 포항남부소방서 신축 현장	

Ⅲ. 의안처리

1. 본회의

구 분		부 의	심의 · 의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계		4 (226)	4 (225)	4 (198)	(26)	(1)	(1)		
조 례 안	소 계	2 (107)	2 (107)	2 (94)	(12)	(1)			
	의 회 제 안	(10)	(10)	(5)	(4)	(1)			
	도지사 제 출	2 (77)	2 (77)	2 (71)	(6)				
	교육감 제 출	(20)	(20)	(18)	(2)				
예산 · 결산		(21)	(21)	(10)	(11)				
동의 · 승인		1 (54)	1 (54)	1 (53)	(1)				
건 의 안		(10)	(10)	(9)	(1)				
결 의 안		(10)	(10)	(10)					
기 타 안		1 (24)	1 (23)	1 (22)	(1)		(1)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2. 상임위원회

위원회	회부	심 사 · 의 결								철 회	계류
		가 결							부결		
		계	조례	예산 결산	동의 승인	건의	결의	기타			
계	3 (229)	4 (225)	2 (107)	(21)	1 (54)	(10)	(10)	1 (23)		(1)	(3)
의 회 운 영	(7)	(6)	(4)				(2)				1 (1)
기 획	1 (18)	1 (17)	1 (10)		(5)	(1)		(1)			(1)
행 정 사 회	1 (64)	1 (63)	1 (44)		(17)	(1)	(1)				(1)
교 육 환 경	(31)	(31)	(24)		(6)			(1)			
농수산	(14)	(14)	(5)		(7)	(2)					
산 업 관 광	(34)	1 (34)	(15)		1 (15)	(2)	(2)				(1)
건 설 소 방	(11)	(11)	(4)		(4)	(2)		(1)			
특 별	(21)	(21)		(21)							
본회의	1 (29)	1 (28)	(1)			(2)	(5)	1 (20)		(1)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IV. 민원처리

1. 청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1		1	1	

※ 누계는 제7대 의회 실적

2. 진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문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어업	기 타
계	5 (88)	(5)	(9)	(9)	1 (18)	(7)	3 (8)	1 (11)	(9)	(12)
의 회 운 영										
기 획	1 (3)						1 (1)			(2)
행 정 사 회	(8)	(4)	(2)	(1)	(1)					
교 육 환 경	1 (19)			(1)		(7)		1 (10)		(1)
농수산	(8)			(1)	(1)				(6)	
산 업 관 광	2 (19)		(7)	(1)			2 (7)			(4)
건 설 소 방	1 (28)	(1)		(5)	1 (16)			(1)	(3)	(2)
특 별 위원회	(3)									(3)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나. 처 리

위원회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5 (88)	5 (88)				
의회운영						
기 획	1 (3)	1 (3)				
행정사회	(8)	(8)				
교육환경	1 (19)	1 (19)				
농 수 산	(8)	(8)				
산업관광	2 (19)	2 (19)				
건설소방	1 (28)	1 (28)				
특별위원회	(3)	(3)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제 출 자 (제출일)	의 안 명	소관 위원회 (회부일)
경상북도지사 (2004.10. 5)	경상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기획위원회 (2004.10. 6)
경상북도지사 (2004.10. 5)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행정사회위원회 (2004.10. 6)

2. 조례 공포사항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공포번호
2004. 9.13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주민투표조례	2004.10. 4
			2833
2004. 9.13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영일만신항민자사업출자심의위원 회구성및운영조례	2004.10. 4
			2834
2004. 9.13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중개정조례	2004.10. 4
			2835
2004. 9.13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 조례개정조례	2004.10. 4
			2836
2004. 9.13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 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 9.23
			2832

3. 기타사항

☐ 농촌지도자 시·군 회장단 및 읍면회장

- 기 간 : 2004. 9. 15(수) 14:00
- 장 소 : 경산 세종수련원
- 참 석 : 이용석 농수산위원장, 정상진 간사, 강영서 의원, 김주연 의원, 박승학 의원

☐ 2004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 기 간 : 2004. 9. 16(금) 11:30
- 장 소 : 안동시민종합회관
- 참 석 : 손규삼 부의장(축사), 나종택 행정사회위원장

☐ 제87회 전국체전(김천) 준비상황 보고회

- 기 간 : 2004. 9. 17(금) 11:00
- 장 소 : 도청강당
- 참 석 : 채희영 산업관광위원장

☐ 경상북도 청소년수련관 개관식

- 기 간 : 2004. 9. 17(금) 14:30
- 장 소 : 경상북도 청소년 수련관(김천)
- 참 석 : 손규삼 부의장(축사), 채희영 산업관광위원장, 한혜련 간사, 김정기 의원, 박두필 의원

□ 2004년도 하반기 의원연수회

- 기 간 : 2004. 9. 20~9. 21
- 장 소 : 경상북도 교육연수원
- 참 석 : 도의원

□ 추석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 기 간 : 2004. 9. 20~9. 25
- 장 소 : 도내 사회복지시설 17개소
- 참 석 : 해당지역 도의원

□ 꽃감 유통 및 감재배 기술 심포지움

- 일 시 : 2004. 9. 21(화) 11:00
- 장 소 :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 참 석 : 정상진 농수산물위 간사(축사)

□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 일 시 : 2004. 9. 21(화) 12: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이철우 의장

□ 우수쌀 전업농 수범사례 발표회

- 일 시 : 2004. 9. 21(화) 14:00
- 장 소 : 농업기반공사 경북본부
- 참 석 : 이용석 농수산물위원장(축사)

□ 3/4분기 시·도 기관단체장 간담회

- 일 시 : 2004. 9. 21(화) 18:30
- 장 소 : 파크 호텔
- 참 석 : 이철우 의장

□ 민방위창설 제29주년 기념식

- 일 시 : 2004. 9. 22(수) 10:00
- 장 소 : 칠곡 종합복지회관
- 참 석 : 이철우 의장(축사)

□ 제3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시상식

- 일 시 : 2004. 9. 23(목) 10:30
- 장 소 : 도청강당
- 참 석 : 이철우 의장(축사), 채희영 산업관광위원장

□ 제11기 민주평통 경북지역회의

- 일 시 : 2004. 9. 23(목) 14:00
- 장 소 : 칠곡 종합복지회관
- 참 석 : 도의원

□ 제31회 관광의 날 기념식

- 일 시 : 2004. 10. 1(금) 10:30
- 장 소 : 경주 힐튼호텔
- 참 석 : 손규삼 부의장

□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4. 10. 1(금) 14:00
- 장 소 : 의회 운영위원장실
- 참 석 : 안순덕 의회운영위원장

□ 안동탈춤 페스티벌 개막식

- 일 시 : 2004. 10. 1(금) 19:00
- 장 소 : 안동 실내체육관
- 참 석 : 이철우 의장(축사), 이정백 부의장

□ 제85회 전국체육대회 결단식

- 일 시 : 2004. 10. 2(토) 11:00
- 장 소 : 경북체육고등학교
- 참 석 : 이철우 의장(축사)

□ 제13회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

- 일 시 : 2004. 10. 4(월) 11:00
- 장 소 : 영천 금호강 천변
- 참 석 : 이철우 의장(축사), 채희영 산업관광위원장, 한혜련 간사,
박두필 위원

□ 제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 일 시 : 2004. 10. 4(월) 11:00
- 장 소 : 구미 금오산 잔디광장
- 참 석 : 나종택 행정사회 위원장(축사)

□ 2004 경북종합예술제 개막식 및 문화상 시상식

- 일 시 : 2004. 10. 4(월) 16:00
- 장 소 : 포항문화예술회관
- 참 석 : 채희영 산업관광위원장, 박두필 의원

□ 전라북도 의정회원방문 환영행사

- 일 시 : 2004. 10. 6(수) 19:00
- 장 소 : 울진 덕구온천호텔
- 참 석 : 손규삼 부의장

□ 동북아비즈니스 촉진회의 환영리셉션

- 일 시 : 2004. 10. 5(화) 19:00
- 장 소 : 경주 현대호텔
- 참 석 : 채희영 산업관광위원장

□ 제5회 경북과학 축전 개막식

- 일 시 : 2004. 10. 7(목) 11:00
- 장 소 : 안동 실내체육관
- 참 석 : 한혜련 산업관광위 간사, 김선중 의원, 장대진 의원,
권중연 의원

□ 경북 물산전 개막식

- 일 시 : 2004. 10. 8(금) 11:00
- 장 소 : 서울 COEX
- 참 석 : 이정백 부의장, 나종택 행정사회위원장, 채희영 산업
관광위원장, 박영화 건설소방위원장, 김정기 의원,
임원식 의원

□ 제85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 및 선수단 격려(산업관광위원회)

- 일 시 : 2004. 10. 8~10. 11
- 장 소 : 청주시종합운동장
- 참 석 : 이정백 부의장, 채희영 산업관광위원장, 김정기 의원,
임원식 의원

□ 2004년도 의원 국제친선 교류

- 일 시 : 2004. 10. 8~10. 13
- 장 소 : 러시아 이르쿠츠크(몽고 경유)
- 참 석 : 최원병 국제친선의원연맹회장외 의원 10명

□ 제85회 전국체육대회 선수단 격려

- 일 시 : 2004. 10. 11~10. 12
- 장 소 : 청주시 일원
- 참 석 : 이철우 의장

VI. 5분 자유발언

□ 제1차 본회의 (2004. 10. 14. 목요일)

김기대 의원(건설소방위원회)

도지사도 나오지도 않고 교육감도 나오지도 않고, 이 핑계저 핑계가 집행부가 많습니다. 얼마나 큰일을 해 가지고 내려올지 모르지만 집행부의 반성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5월25일날 국무회의에서 호주제를 폐지해야만 된다 하고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다가 자료를 넘겨놓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9조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야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일본놈들은 그 당시에 우리 성씨를 없애고 일본 성으로 하라고 창씨개명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은 외국나라를 본보지 말고 그 나라 국가 고유의 전통을 계승할 줄 알아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나 경북도의회에서, 경상북도집행부에서, 호주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중앙에서 야단법석이고 또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호주제로 인해서 여권신장이 저하되고 남녀평등이 무너지고 여성의 사회활동, 가정활동이 잘 안 되는 양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OECD국가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호주제 때문에 이혼율이 높습니까?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것 호주제 때문에 교통사고 많이 납니까?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재벌그룹이 중국을 비롯해서 외국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한국의 경제는 바닥을 헤매고 고국 대한민국에서는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고 다 빠져나갑니다. 호주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고 경제가 안 됩니까? 나이 많은 어른들은 자식에게 배신을 당해서 경로당이다 양로원이다 복지시설로 떠나고, 청소년들은 거리를 헤매고, 실업자가 늘어나서 노숙자가 늘고 이 모든 것이 호주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느 나라든 그 나라에는 고유의 미풍양속이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호주제를 폐지하겠노라”, 여성 표를 의식해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한층 나아가서는 “동성동본도 혼인하도록 만들겠다, 근친혼을 폐지하고 8촌만 넘으면 혼인을 해도 되겠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은 동성동본 혼인입니다. 그 다음 나타날 것은 8촌만 넘으면 혼인해도 좋다, 이런 악법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집행부에서 주야로 자료 뽑은 것이 1,000건이 넘습니다. 소형화물차에 한 트럭입니다. 오전만 국정감사하고 끝내버렸습니다.

이의근 도지사를 비롯해서 도승회 교육감, “지방분권화 시대에 이것을 개혁해야 된다, 도의회 의원이 있는데 왜 국정감사를 하느냐”, 반론도 제기 못하고 저 역시 용기가 부족해서 막지도 못하고, 도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직장협의회에서는 그렇게 일거수 일투족을 잘 살피면서도 현수막 하나 걸어내 놓고는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서울시 공무원은 “국정감사를 받지 못하겠다, 국비 지원된 금액에 한해서만 자료를 내겠다” 고 했는데 부끄럽게도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은 일선시군 교육청 1,000만원짜리

예산까지 보고를 다 했습니다. 그것도 오전만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개혁입니까? 이것이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는 겁니까? 그런데도 호주제는 폐지되는 것으로 분위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지사나 경상북도교육감이 중앙에 광역자치단체장 회의 시나 언론과 대화할 시에 “호주제 폐지는 시기상조다. 우리 영남은 유림의 고을이요 향반의 고을이요 천년의 한민족 전통문화를 계승한 이런 유서 깊은 고을인데 우리 경북의 정서는 아직 빠르다는 그런 여론이 일어난다” , 사회복지여성국장, 중앙에 가서 그런 말 한 마디 한 사실이 있습니까? 대통령 눈치나 보고 중앙정부의 눈치나 보고 무사안일주의로 천년의 전통문화 계승인 호주제가 폐지된다고 해도 강 건너 불 보듯이 보는 집행부의 안이한 생각을 질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이 갑신년입니다. 120년 전에 김옥균, 박영효 같은 무리가 갑신정변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사람을 앞세우고 삼일천하를 이루다가 일본으로 도망을 가고, 그 뒤에 민비가 왜놈에 의해서 시해되고 그 해가 바로 금년입니다. 1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올해 갑신년에 또 다시 호주제가 폐지된다면 이것은 정변이 아니라 이 나라 광복 후 엄청스런 악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는 것은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 나라의 고유문화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정말 이것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에서 호주제 때문에 여성의 지위나 여성의 활동사항이 절대 위축되지 않습니다. 이제 평등화가 넘어서 오히려 여권신장이 남성보다 더 올라가 있습니다. 가정에 여성분 다 관리하죠, 능력만 있으면 여성 국회의원, 여성 장관, 여성 도의원, 여성 시의원, 여성 간사도 나옵니다.

왜 호주제가 들어서 여성의 활동사항을... 7분 아니라 8분이라도 좀 합시다. 그때는 시간 어지간히 잘 따진다, 지사하고 교육감도 여기 안 나왔는데... 그래서 본의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호주제 폐지만은 너무 빠르다고 말하고 싶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과 저의 의견이 같을지 다를지 그걸 몰라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의근지사나 도승회교육감이나 그 밑의 공무원이 뭐 경북이 문화의 고을이다, 향반의 고을이다, 선비의 고을이다라고 입으로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이 호주제만은 이번에 폐지되면 경북의 정서와는 맞지 않다고 한 두 마디씩 했는 공무원이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보라고요.

정부의 눈치나 보고 가정이 파괴되고 국가, 사회의 질서가 파괴 다 되어도 정년까지 잘하면 되지 내가 왜 튀는 언행을 하겠느냐 이런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고 간에 대표자가 있습니다. 지사가 있으면 군수가 있고 의회가 있으면 의장이 있고 상임위원장이 있듯이 대표자 없는 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 가정제도도 그 대표자가 있는 것이 뭐가 나쁘니까?

그 골격을 보면 여성분이 결혼을 해서 개가를 하면 초등학교 다닐 때는 A성을 따랐는데 개가를 해서 B성 집으로 가면 그 B성을 따라도 좋다는 겁니다. 다시 또 운이 없어 개가해서 C가문으로 가면 C성을 따라도 좋다는 겁니다. 아들을 둘 놓으면 하나는 남자 성을 써도 좋고 하나는 여성분 성을 써도 좋고 부부간에 의논만 하면 성은 갈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추석에 차례를 지냈을 때 여성분은 지위, 지방에다가 성씨를 나열해도 남성의 제사는 고위제사는 절대 성씨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성씨가 A성도 되고 B성도 지위에

나타내야 할 판입니다. 왜? 한 가정에 남자성이 둘, 셋, 넷 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호주제 폐지를 막는 것이 맞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꾸 5분 발언이 아니라 도정질문 같다고 뒤에서 충고를 하니 그것 또한 규정을 어겨서 죄송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호주제는 아직 너무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성주출신 김기대 도의원이 몇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호의원(행정사회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철우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구미출신 김석호 도의원입니다.

저는 집행부에 두 가지만 당부 드리고자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우선 먼저 지금 근래 와서 경북과 대구의 통합논의가 많이 정치쟁점화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과연 경상북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실익이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경상북도의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당장 통합했을 때 대구 경북이 한 뿌리라는 사실은 경북도민 누구나 다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구와 경북이 통합했을 때 우선 첫째 1만여 명이나 되는 공무원을 어떻게 축소할 것인지 또 얼마만큼 줄였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두 번째 대구와 경북이 통합했을 때 약 5조원이나 되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왜냐 하면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그 재정이 지금 현재는 오히려 축소가 되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국가시책은 지방분권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에다가 공기업 등등 정부권한을 많이 이양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많은 광역자치단체가 있는데 경상북도만 광역자치단체를 두 개를 한 개로 줄였을 때 결국 우리가 묘사 지내고 떡을 봉송을 쌀 때

머리 숫자로 씁니다. 그렇다면 광역자치단체 한 개일 때 중앙 정부에서 더 많은 것을 받아낼 것인지 아니면 두 개일 때 두 개의 몫을 받아낼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과연 그게 우리 도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충분히 연구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하든 안 하든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경남이나 전남이나 그리고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서는 두 몫 세 몫의 봉송을 받아 가는데 경북도가 스스로 자초해서 봉송을 한 개 받은 그러한 우를 범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되어 지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장단점을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세계 유가는 고유가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물론 아랍 쪽의 분쟁이나 등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지금 세계경제전문가들은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류절약에 대한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가시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할지라도 이미 지방자치제를 십여 년 이상 실시하고 있는 이상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우리 경북도에서도 유류절약 정책을 제시하고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절약운동이나 절약 시책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해서 경북도가 고유가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 이러한 고유가를 극복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나라

산업경제에 엄청나게 심각히 우려될 정도로 피해를 지금 입히고 있고 또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집행부에서는 정책방안을 만들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또 고유가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욱의원(교육환경위원회)

이번 회기가 질의도 없고 해서 부득이 우리 북부지역의 양계군이 수년 내에 군으로서의 행사를 못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집행부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임하댐이 조성되고 난 이후에 계속 수질문제 등등 하다가 이제 낙동강수보법이 통과되면서 이런 문제가 결국은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국책사업의 일환인 임하댐 건조이후에 상류지역 주민의 불편과 불이익이 갈수록 심화되는 현실에서 더욱 황폐화를 가속시키는 환경청 토지매입의 문제점을 본의원이 3월 임시회의 때도 문제 제기 이후에 다시 한번 도에서 중앙부처에 필히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건의해달라는 실현이 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낙동강수계물관리법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2002년1월14일에 제정 공포되었고 동년 7월13일에 시행령, 7월29일에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 임하댐 상류지역에 있는 청송군은 수변구역 대상이 8개면 중에 5개면이 해당되고 면적으로서는 2,074만5,450평이나 됩니다. 또한 영양군은 6개 읍면에서 3개 면이 902만3,434평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되면 면적으로는 3분의 1이상이 다 날아 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다 수용된다 하면 양계군의 행정 능력은 마비가 됩니다. 농업을 생명으로 하는 주민으로서는 엄청난 면적이고 또한 영농 근간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허나 관계청에서는 주민들과의 토지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보다 성실한 협의도 없이 토지를 매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3년도 11월에 대구지방환경청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매입가격은 실제 거래금액의 1.5~2배 정도로 매수해 주며, 매수시에 지상물, 특히나 과목도 보상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현재 환경청에서 시행하는 방법은 과수원으로 등록된 묘목만은 보상해 줍니다. 허나 일반적인 과수, 등록되지 않은 과수에는 전혀 보상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영농비를 2년 정도를 보상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매수가격이 2개 감정평가사 감정에 일관하지 말고 상기와 같이 주민들의 요구에 성실하게 협의하여 매수가격을 결정지어 주기를 바랬습니다마는 그대로 되지 않고 더불어 영농손실보상비도 토지보상과 함께 보상받아야 하며 관계청은 보상 문제를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과 성실한 협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이 우려했던 민심이반과 해당지역의 황폐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토지 등의 매수는 낙동강수계물관리법률 제8조1항에 “국가는 상수원관리지역과 그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 등”을 말합니다.)”, 8조2항에 보면 “국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정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5조2항의 시행규칙 제48조1항에 보면 “공익사업시행지구내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 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된 도별 연간 농가평균단위 경작면적당 농작물조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한 것은 상기 법률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수변구역지역 내에서의 토지매수는 민법상의 계약이 아니고 엄연히 상기 공특법상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타당합니다.

도에서는 조속히 환경부와 협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적정 보상이 되도록 건의하여 주시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취득한 토지는 현장여건에 맞게 수목을 식재하거나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수계토지에 이 나무나 생태공원을 조성한다. 하면 인근지역에 토지를 농사짓는데도 피해가 옵니다. 이 피해 대책도 지금 현재 전무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건의하냐 하면 지금 임하댐 상류지역에서의 영양과 청송의 민심이 사실상 굉장히 흥흥해 집니다. 많이 떠 있습니다. 떠있는 실정인데 이 일이 이렇게 시행된다 하면 앞으로 양계 군의 행정능력이나 행정기반조성은 사그리 무너집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주민이 요구하는 2년간의 영농보상비 및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결과적으로 농토를 버리고 떠나가야 될 형편인데 그 대책이 전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우리 주민의 실정에 맞게 보상을 받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제2차 본회의 (2004. 10. 27. 수요일)

장미향의원(교육환경위원회)

상주출신 교육환경위원회 장미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 받아 말씀드릴 발언의 요지는 대규모 광산개발 대형댐 건설, 위락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로 인해 백두대간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단절됨에 따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환경포럼에서 1999년부터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법제화 노력을 시작하여 2003년12월31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된 이후 오히려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으로 생업을 포기할 정도로 허탈감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상주시는 경북지역에서 재정이 열악한 신활력 지역으로 발표되어 지역민들은 어떻게 하면 세수확보에 도움이 될까 관과 민이 하나가 되어 고민을 하는 가운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하루 아침에 희망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림청 홍보 자료에 의하면 보호지역 주민들에게는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산림시책에 의한 지원사업과 경제소득, 사회복지, 생태문화기반 증진사업을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확보도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백두대간이란 산천의 모양과 방향을 기초로 구분한 우리 민족 고유의 지리 인식체계로서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까지 총 길이 1,400km, 남한 684km를 단절없이 이어지는 한반도의 등뼈를 이루는 핵심 산줄기라고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은 민족정기의 상징이며 자연환경의 보호이기에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면 누구다 다 아는 상식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한반도의 핵심 산줄기이며, 생태계의 보고인 백두대간을 개발행위 제한 및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우리 역사와 문화의 뿌리가 숨어 있는 곳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보전하고 다양한 동·식물의 보금자리가 되는 곳이기에 모든 국민과 함께 지켜가야 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대해서 산림청이 지정한 지역으로는 백두대간이 능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역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핵심구역과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 핵심구역의 보호상 필요한 지역인 완충구역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현재 산림청의 시안을 보면 전국 6개의 도 32개 시·군 53만5,918ha 그 중 핵심구역은 24만2,477ha 완충구역은 29만3,441ha가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 경상북도에도 김천, 상주, 문경, 예천, 영주, 봉화 6개 시·군이 13만4,811ha 핵심구역은 34%, 완충구역은 66%인데 전국 보호지역 면적 53만5,098ha의 25%에 해당하는 면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상주시 화북면의 경우만 보더라도 백두대간의 줄기를 따라 형성된 마루선에서 완충구역이 총 8km이기 때문에 화북에서 갈령재까지 화북에서 문장대까지로 구분하면 화북면 전역 대비 약 90% 정도가 백두대간 보호법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청에서 작성된 원안대로 지정이 될 경우 개발이 완료된 보은군 속리산 주변과는 달리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개발하지 못하고 영원히 낙후지역으로 남아야 한다는 피해의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핵심

지역 내지는 완충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을 매수당하게 됨으로써 삶의 터전 자체를 잃을까 전지역 주민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뜰이나 농촌이 어려워 이농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상주시에서도 화북면이 차지하는 관광자원의 비중을 볼 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으로 주민들은 희망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무한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보호법으로 인해 다양한 계획들을 연속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상주시와 지역주민들도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 산림청에서 작성된 원안을 수정하여 백두대간 보호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지정될 수 있도록 안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한 상태이지만 과연 완충지역이 얼마나 축소될지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백두대간의 보호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전체에게 공익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주고자 함인데 백두대간과 인접하여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호비용을 책임지게 하는 것도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민과 지역민이 국가가 함께 필요한 비용을 반드시 공동 부담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상주시의 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주민들은 백두대간에 포함되는 전주민들과 연대하여 백두대간 보호법 폐기를 관철하려는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부딪쳐 상처로 얼룩진 법이 되고 나면 몇 년간 연구한 백두대간 보호가 제대로 될지 실로 걱정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도 백두대간 보호 관련 지역인 강원도, 충청도 등과 함께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을 해 왔겠지만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상북도지사님이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지금까지 현실행정을 좀더 심도있게 해야만 하는 공청회를 통하여 지역민의 의견을 듣고 이해를 돕지 않았기에 해당 주민들은 우왕

좌왕하며 실의에 빠져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지역간 균형발전의 차원에서도 낙후된 우리 지역민들의 불만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지금까지 추진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 및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승학의원(농수산위원회)

청송출신 박승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임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하고 추진해 왔던 공공기관 이전 등이 위축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신행정수도 이전문제는 완전히 무효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완전히 수도이전과 별개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나 여타 지방정부의 입장으로서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욱 강력하게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화 정책을 요구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 지난 26일에는 지방분권 조기실현을 위한 시·군의원 결의대회가 열렸고 이에 계속적으로 각계각층의 촉구결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도의 집행부는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더욱 강조하고 요구하여야 하며, 대내적으로 범도민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이전효과가 큰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현정부에서도 공공기관 이전 문제 등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동안 우리 도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주택공사 등 13개의 공기업과 한전, 석유공사 등 23개 공공기관을 합하여 36개의 기관을 선정해서 유치 제안서를 신청한 바 있고, 당초 계획에 의하면 정부는 이전대상이 되는 161개 기관을 11개 시·도에 배분하기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전 안을 전제로 했을 때 11개 시·도에 한 개의 혁신도시 또는 혁신지구의 선정을 하기로 하였고, 혁신지구의 위치는 교통여건, 균형발전 효과,

인근도시, 산업단지, 대학 등과 연계성을 방어할 수 있는 위치에서 조성토록 하고 그 결정은 시·도와 협의를 해서 정부가 결정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난 8월13일 정무부지사가 건설교통부를 방문했을 때 구미나 김천 또는 경북서북부 지역에 50만평 규모의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계획을 설명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간의 집행부의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관한 노력을 인정하기는 하나 본의원은 그 진행과정상 아쉬움과 개선책을 지적하고 자합니다.

첫째, 혁신도시 건설 방안에 대한 어떤 의견 수렴과정이 전무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제시한 서북부지역이 또 다른 경북내의 불균형을 만들 수도 있음을 전제로 했을 때 사전에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와의 협의과정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가 있었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근 대구시의 경우에는 26개 기관을 신청하면서 추진상황과 유치 전략 토의를 2회에 걸쳐서 가진 바 있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의회에서도 지난 8월31일 191회 임시회기 중에 두 분의 선배의원님들이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도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이에 대한 답변으로 공공기관의 이전 노력은 집행부만의 힘으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지역의 모든 주체들이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갈 때 보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북부 지역의 미래형 혁신 도시 계획은 보고된 바도 없고, 언급된 바도 전혀 없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이 역풍을 맞는 요즘의 나라 형편을 보면서 민의를 수렴하는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확히 인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지역적인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이고 다소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의회이지만 공개적이고 민의 수렴과정을 거친 정책대안만이 경쟁력이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향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추진사항을 의회와 협의를 하고 유치전략을 같이 만들어 갈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둘째, 대구·경북의 정책공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북과 대구의 공공기관 유치 중복기관은 한전, 토지개발공사, 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산원, 정신문화연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6개 기관입니다. 지난 도정질문 답변에서는 지사는 한전을 예를 들면서 한전을 대구에 양보를 하더라도 경북과 대구의 공조부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수도이전이 백지화 된 이 시점에서 당초 공공기관 이전 계획보다 충청권 배려가 많아진다면 우리의 몫은 줄어들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시·도가 공조하는 데에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도 중요하지만 도의 독자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도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을 다시 검토하고 유치노력에서도 더욱 적극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구체적인 방안을 반드시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협의와 토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도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전략이 주먹구구식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전대상 기관의 특성과 지역발전 기여도 등이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되고 그에 따라서 300만 도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욱이 지역의 모든 주체들이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갈 때 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식적인 유치계획단 또는 유치자문단의

구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정부는 균형발전위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것을 굉장히 지양시켰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정치인 또는 대학, 지역기업, 시민단체, 지역 출신의 영향력 있는 주요인사, 도민 등 지역의 역량을 총체적으로 결집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도 그렇게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본의원은 안타까운 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정부의 분권정책과 국토균형발전 계획에 따른 우리도 노력의 결과가 곧 20년 뒤에 경북·대구권의 미래 모습을 결정짓는다는 점을 감안해서 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대응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을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 조 례 안 : 2건
- 동 의 안 : 1건
-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총괄

【조례안 : 2건】

- 경상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4. 10. 27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대상)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경상북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도지사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계획을 일정기간 동안 도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접수) ①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심의) 도지사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상북도사회 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통보)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경제통상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수산국장, 보건환경산림국장, 사회복지여성국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자 중에서 도
지사가 위촉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단체보조금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지원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2.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및 지원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
3.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등)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 및 경상북도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 이하 보조금의 신청,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은 2005회계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부터 적용한다.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4. 10. 27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5조”를 “지방자치법 제135조, 노인복지법 제34조·제35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치) 요양병원의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4조중 제목 “(운영)”을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요양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비의 일부와 의료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도지사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요양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제5항중 “제4항의”를 “제4항에 의한”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기준에 의한다”를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호중 “목적 및 운영방침(기본방침, 치료·간호·보호의 기본방침, 지역행정과 연계방침, 직원연수방침 등)”을 “목적 및 운영방침”으로 한다.

제8조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해 위탁 재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을 손·망실할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 내지 제12조를 제11조 내지 제13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1조(현행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요양병원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야하며, 병원 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병원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부회계연도 기준에 의거 매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와 감독) ①도지사는 수탁자에 대하여 요양병원 운영이나 업무대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 장부, 기타 관계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요양병원의 위치

명 칭	위 치	비 고
경상북도립안동 노인전문요양병원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363-2, 364-2, 372-1번지	
경상북도립경산 노인전문요양병원	경상북도 경산시 상방동 242-3, 250번지	
경상북도립김천 노인전문요양병원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능치리 산97-15번지	
경상북도립포항 노인전문요양병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315번지	

【별 표 2】

요양병원에서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사항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용일지

나. 직원의 근무상황, 급여, 연수 등에 관한 사항

다. 월간 및 연간의 사업계획표와 사업실시 상황표

2. 입·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

3. 요양, 치료 및 그 외 다른 서비스에 관한 기록

가. 입원자 기록대장(병력, 생활력, 가족의 상황 등을 기록한 것)

나. 진료, 간호, 기능훈련 등의 일지

다. 진료기록 등 진료에 관한 기록

4. 회계정리에 관한 기록

5. 시설 및 구조설비에 관한 기록 등

신 · 구조문 대비표

□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135조.....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35조, 노인복지법 제34조 · 제35조
제2조(위치)요양병원은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363-2번지 및 경상북도 경산시 상방동 242-3번지에 둔다.	제2조(위치)요양병원의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4조(운영)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 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자에게 10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 계약할 수 있다.	제4조(설치 및 운영)① 경상북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요양병원을설 치·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게 10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양병 원을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③
<신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비의 일 부와 의료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요양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구입 등의 업무대행 및 운영비의 일부와 의료장비 등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 탁자에게 요양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⑤제4항의	⑤제4항에 의한
.....	
.....	
.....	
제5조(의료수가)	제5조(의료수가)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②
.....	
..... 기준에 의한다.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으로 한다.
제6조(관리규정)	제6조(관리규정)
.....	
.....	
1.목적 및 운영방침(기본방침, 치료·간호·보호의 기본방침, 지역행정과 연계방침, 직원연수방침 등)	1.목적 및 운영방침
2.~7. 생략	2.~7. 현행과 같음
제8조(기록의 정리)	제8조(기록의 정리)
.....	
【별표】와 같다.	【별표 2】와 같다.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경우 당해 위탁 재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의 손·망실시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해 위탁 재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을 손·망실할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0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요양병원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병원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병원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한다.</u> <u>② 수탁자는 정부회계연도 기준에 의거 매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제10조(보고와 감독) ①도지사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자 및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구입업무 등을 대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 장부, 기타 관계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u>	<u>제11조(보고와 감독) ①도지사는 수탁자에 대하여 요양병원 운영이나 업무대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 장부, 기타 관계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u>
<u>②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②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u>
<u>제11조~제12조(생략)</u>	<u>제12조~제13조(현행 제11조~제12조와 같음)</u>

【동의안 : 1건】

- 경상북도와 베트남 타이응우엔성 간 자매결연체결안

경상북도와 베트남 타이응우옌성간 자매결연 체결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회장 이 철 우

2004. 10. 27

경상북도와 베트남 타이응우옌성간 자매결연 체결안

1. 제안이유

- 베트남 타이응우옌성은 북부 산간·평야지역과 수도 하노이와 이어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중요한 교역대상국일 뿐 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지역적 요충지로서 도정의 국제화 추진에 필요한 자치단체임.
- 그간 양 도-성간 사전교류를 통하여 교류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교류여건이 성숙되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 의결을 거쳐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함

2. 주요골자

- 건 명 : 경상북도와 베트남 타이응우옌성간 자매결연체결
- 자매결연 주요협정내용
 - 경제, 문화, 관광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 교류확대
 - 행정, 민간 참여로 공동 이익과 발전에 기반을 두고 협력
 - 교류협력사업 공동 개발, 실천 등 상호 지속적인 노력 경주
- 체결방법 : 자매결연 협정서에 지사, 성장 서명

3. 참고자료

- 경상북도와 베트남 타이응우옌성간 자매결연 체결안

경상북도와 베트남 타이응우옌성간 자매결연 체결안

경상북도와 베트남 타이응우옌성간에 교류여건이 성숙되고 상호 공동 발전이 기대되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와 베트남 타이응우옌성간의 자매결연 체결안을 의결한다

1. 의결사항

- 건 명 : 경상북도와 베트남 타이응우옌성간 자매결연 체결
- 자매결연 주요 협정내용
 - 경제, 문화, 관광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 교류확대
 - 행정, 민간 참여로 공동 이익과 발전에 기반을 두고 협력
 - 교류협력사업 공동 개발, 실천 등 상호 지속적인 노력 경주
- ※ 자매결연 협정서는 양 도·성간 협의하여 추후제작
- 체결방법 : 자매결연 협정서에 지사, 성장 서명

2. 향후일정

- 2004. 10월 도의회 의결
- 2004. 자매결연 체결(일정 별도수립)

3. 기대효과

- 하노이 근교에 위치하여 베트남 및 동남아 진출 거점 확보
- 우수한 인력과 풍부한 광물자원 등으로 발전잠재력이 무한한 지역에 경북의 첨단기술과 기자재 수출 기대
-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보유하여 문화·관광교류 활성화 기대

붙 임 : 경상북도와 베트남 타이응우옌성간 자매결연 체결 설명자료

경상북도와 베트남 타이응우옌성간 자매결연 체결 설명자료

1. 자매결연 제안 자치단체

-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2. 필요성

- 수도 하노이 근교에 위치하여 베트남 및 동남아 진출거점 확보
- 풍부한 자원보유 및 공업의 중심지역으로 철강, 전자 등 첨단기술이 낙후한 타이응우옌성에 경북의 첨단기술 및 기자재 수출 기대
- 편리한 교통, 풍부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가 기대됨
- 새마을운동, 영농기술 분야 등 공동 협력사업 가능 지역임

3. 경북-타이응우옌성 교류 추진경위

- 2003. 9.18 베트남 『카이』 총리 포철 방문 귀국 후 타이응우옌성과 교류 희망의사 전달받음.
- 2003.11.26 주한 베트남대사관에서 경상북도현황 자료 요청
- 2003.11.27 교류희망 서신 발송(도 → 베트남)
- 2003.12. 1 방문일정(12.21~24) 제안서신 발송(도→ 베트남)
- 2003.12. 5 타이응우옌성장 초청장 접수(베트남 → 도)
- 2003.12.21~24 도대표단 타이응우옌성 방문(도지사 외 6명)
 - 12.22 10:00 교류의향서 체결
- 2004. 7.26~31 도 실무단 타이응우옌성 방문 (새마을민방위과장 외 3명)
 - 새마을운동 전수 여건 조사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 9. 생략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사항

5. 양 자치단체 비교

구 분		경 상 북 도	타이응우엔성
인 구		282만명	108만명
면 적		19,023km ²	3,541km ²
산업경제	1인당GDP	'03년 10,000불	'02년 미화 200불
	수 출 액	'03수출251억불 (전국의 12.9%)	'02수출 25백만불
	주요산업	- 전자산업(구미) - 철강,기계류(포항) - 섬유,금속,광화학산업	- 농업지역 및 광물자원 풍부 (베트남 제2의 차 생산과 석탄생산지) - 공업이 발달 (제철공업구역, 송공공업구역, 라히엔 공업구역)
지 역 특 성		- 한반도의 동남부에 위치 - 역사와 전통의 고장 - 농업과 공업 고루 발달	- 수도 하노이 인근에 위치 - 문화유적, 관광자원 풍부 9개 행정구역 (1시, 1타운, 7디스트릭트)
자매결연단체		- 미국 오하이오주 - 일본 시마네현 - 중국 하남성 - 러시아 이르크츠크주 - 남아공 노스웨스트주 - 프랑스 알자스주 - 터키 불사주	

타이응우엔 (THAINGUYEN) 성 현황

□ 일반현황

- 위 치 : 베트남 북동부, 수도 하노이와 인접 (60km)
- 명 칭 :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 타이응우엔성
(ThaiNguyen Provinc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 면 적 : 3,541km² (전국토의 1.13%, 산림 48%, 평야23%)
- 인 구 : 약 108만명(전국의1.41%, ※ 인구밀도 306명/km²)
 - 인 종 : 8 (키인, 타이, 뇨, 산디유, 헤몽, 산 차이, 호아, 다오)
- 주요도시 : 타이응우엔시(省市), 쑹콩시 등
- 행정단위 : 9개 행정구역으로 구성(1시, 1타운, 7 디스트릭트)
 - 성장 : 응우엔 반 킴(Nguyen Van Kim)
- 성의회 : 선출직, 성의원 71명, 임기 5년,
 - 주의장 ; 루앙 덕 틴(Mr. Luong Duc Tinh),
- 직 제 : 성장, 부성장(3), 1실 12국
- 총생산액(GDP) : 216백만불 (1 인당 200)
- 업 체 수: 10,380 (광업 532, 제조업 9,846, 전기, 가스,용수공급 2)
 - 산업인력: 55,349명
- 교역규모 : 25백만불('02년 수출)
- 외국인 직접투자 : 총14건, 총 56백만불
- 핵심산업(제철, 기계, 건축자재, 소비재생산 등)
 - 농업(베트남 제 2의 茶 생산지), 광업(제 2의 석탄생산지)
 - 공업(제철공업구역, 쑹꽁 공업구역, 라히엔 공업구역)
- 학 교 : 대학 4 , 기술전문대학 14
- 호 텔 : 6개
- 경작지 : 145,683ha

□ 지역적 여건

- 하노이 근교에 위치, 경제·문화교류의 중심지
 - 북부 산간·평야지역과 수도 하노이와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
- 풍부한 광물자원으로 공업의 중심지
 - 석탄은 쩡 닝(Quang Ninh)성 다음으로 제2의 생산지
(연간 1백만톤 이상, 그외 철, 석회석, 금, 은, 니켈, 수은)
- 베트남에서 산업화한 지역
 - 제철공업구역, 쑹 꾁 공업구역, 라 히엔 공업구역
- 유리한 교통망
 - 도로망 : 총 2,753km (국도 183km, 지방도 105km, 시군도 2,413km)
 - 3개의 철도망, 2개의水路(다 프훅~하이퐁 161km, 다 프훅~홍가이: 211km)
- 풍부한 관광자원
 - Dinh Hoa의 ATK 역사지는 호치민 당수가 프랑스에 저항한 지역으로 유명 (1946-54)
 - 많은 유적지와 소수민족박물관, 군사박물관 등이 있으며, 누이콕 호수는 유명관광지임
-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 투자유치를 위한 인프라구축, 행정절차 정비, 투자인센티브 제공
 - 저렴한 부지 임대료 : 연간 0.09 USD/m² (공장건축완료후 11년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총괄】

- 행정사무감사계획 총괄
- 감사요령 및 협조사항

행정사무감사계획 총괄

1. 감사기간 : 2004. 11. 21~11. 30 (10일간)

2. 감사대상

가. 대상기관

〈경상북도〉

구 분 위원회별	감 사 대 상 기 관			현 지 확 인
	계	본 청	직속기관·사업소 및 기타	
계	33	11	22	13
의회운영	1		○ 의회사무처	
기 획	8	○ 기획관리실 ○ 공보관실 ○ 감사관실	○ 공무원교육원 ○ 포항·김천·안동 의료원 ○ 경북개발공사	
행정사회	4	○ 자치행정국 ○ 사회복지여성국	○ 자연환경연수원 ○ 경도대학	○ 사회복지시설 ○ 지역개발사업
교육환경	5	○ 보건환경산림국	○ 산림환경연구소 ○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 ○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보건환경연구원	
농 수 산	6	○ 농수산국	○ 농업기술원 ○ 수산자원개발연구소 ○ 가축위생시험소 ○ 농산물원종장 ○ 성주과채류시험장	
산업관광	2	○ 경제통상실 ○ 문화체육관광국		○ 경북신용보증재단 ○ 중소기업지원센터 ○ 경북통상 ○ 문화재연구원 ○ 경북테크노파크 ○ 생활체육협의회 ○ 한국국학진흥원
건설소방	7	○ 건설도시국 ○ 소방본부	○ 상주·문경·안동 소방서 ○ 종합건설사업소 ○ 종합건설사업소북부 지소	○ 원흥지구수해상습지개선사업(상주) ○ 가은 우회도로확·포장공사(문경) ○ 나소도로확·포장공사(안동) ○ 영양 무창~수비간도로 확·포장공사

〈경상북도교육청〉

구 분 위원회별	감 사 대 상 기 관			현 지 확 인
	계	본 청	직속기관·사업소 및 기타	
계	21	2	19	
교육환경	21	○ 교육국 ○ 기획관리국	○ 경상북도교육과학연구원 ○ 경상북도교육연수원 ○ 화랑교육원 ○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 안동·구미·상주 도서관 ○ 포항·영주·군위·청송·영양·영덕·고령·성주·칠곡·봉화·울진·울릉 교육청	

나. 대상 사무

(1)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 경상북도 관할 구역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경상북도에 속하는 사무
- 지방자치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지사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등
단, 위임받은 국가 사무 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

(2) 주요 감사사항

구 분	감사대상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의회운영 위원회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 ○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 2004년도 예산집행 현황 ○ 2005년도 예산심의 자료수집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여 요구하는 사항
기획 위원회	○ 주요시책업무 추진사항 ○ 2003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사항 ○ 부문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 2004 예산집행 상황 ○ 2005 예산심의 자료 수집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행정사회 위원회	○ 2003, 2004년도 주요시책업무 추진상황 및 실적 ○ 2003, 2004년도 세입 및 예산집행 현황 ○ 2005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교육환경 위원회	〈경상북도〉 ○ 2004년도 주요시책업무 추진현황 및 실적 ○ 2004년도 예산집행 현황 ○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 2003~2004년도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과 조치결과 ○ 2004년도 민원처리현황 ○ 소관 부서의 주요 당면 현안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구 분	감사대상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교육환경 위 원 회	〈경상북도교육청〉 ○ 2004년도 주요시책업무 추진현황 및 실적 ○ 2004년도 예산집행 현황 ○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 2003~2004년도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과 조치결과 ○ 2004년도 민원처리현황 ○ 소관 부서의 주요 당면 현안사항 ○ 소규모학교 통폐합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및 폐교 활용대책 ○ 사학지원, 교육정보화사업 등 전반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농 수 산 위 원 회	○ 2004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 2004년도 예산집행사항 및 미집행 사항 ○ 2005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산업관광 위 원 회	○ 2004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 2004년도 예산집행사항 및 미집행 사항 ○ 2005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건설소방 위 원 회	○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2004년도 예산집행상황 ○ 2004년도 추경 및 2005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여 요구하는 사항

다. 제출할 서류

(1) 업무보고서

(2) 감사자료

〈경상북도〉

감사위원회	부 서 별	공통사항	부서 개별 요구사항	비고
	합 계	102	890	
의회운영	소 계		6	
기 획	소 계	9	160	
	공보관실		12	
	감사관실		18	
	기획관리실		73	
	공무원교육원		16	
	지방공사의료원		31	
	경북개발공사		10	
행정사회	소 계	23	206	
	자치행정국		103	
	사회복지여성국		53	
	자연환경연수원		17	
	경도대학		33	
교육환경	소 계	10	71	
	보건환경산림국		51	
	보건환경연구원		6	
	산림환경연구소		9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		2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3	
농 수 산	소 계	14	202	
	농수산국		129	
	농업기술원		73	

감사위원회	부 서 별	공통사항	부서개별 요구사항	비고
산업관광	소 계	11	105	
	경제통상실		58	
	문화체육관광국		41	
	엑스포		6	
건설소방	소 계	35	140	
	건설도시국	22	77	
	종합건설사업소		15	
	소방본부	13	48	

〈경상북도교육청〉

감사위원회	부 서 별	공통사항	부서개별 요구사항	비고
교육환경	계	12	119	
	본청(직속기관)	5	67	
	시군교육청	7	52	

※ 감사자료 목록은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에 덧붙임

(3) 작성방법

- 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현지 확인, 서류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므로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 수감준비를 하여야 함.
-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는 2004.10.30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실·국 단위로 편철 후 2004.11.10(월)까지 소관 상임위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다만, 작성기준일을 따로 지정하였거나 10월30일 현재로 작성이 곤란한 자료는 작성 기준일을 별도로 표시를 요함

- 제출되는 감사자료의 규격은 A4 크기로 하고, 위원회별 20부씩 배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후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도 동일 방법임.
- 감사대상 기관별로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를 별책 작성
- 「업무보고」에 포함될 도정보고 내용은 감사대상 기관별로
 -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 2003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내역
 - 기타 특수시책 추진현황 등을 기본으로 “위원회별 주요 감사 사항”의 목록을 포함하여 작성
- 감사 자료는 각 상임위원회별 자료요구 목록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타부서 소관은 후단에 포함.

3. 감사위원회 편성

가. 의회운영위원회

- 감사위원장 : 안순덕 의회운영위원장
- 감사 위원 : 박승학, 김병진, 김성하, 김순건, 이호근,
장미향, 장욱, 정무웅, 정상진, 한혜련, 황복희,
황상조의원
- 사무보조(의회 직원)
 - 전문위원 주근호, 행정주사 이병월, 행정주사보 황욱준,
속기사

나. 기획위원회

- 감사위원장 : 이원만 기획위원장
- 감사 위원 : 김병진, 권경호, 권종연, 양재경, 장찬식,
장하숙, 정무웅, 최영욱의원
- 사무보조(의회 직원)
 - 전문위원 김승태, 행정주사 백승걸, 행정주사보 채희경,
속기사

다. 행정사회위원회

- 감사위원장 : 나종택 행정사회위원장
- 감사 위원 : 황상조, 김석호, 방대선, 손경찬, 이상천,
장대진, 황복희, 장대진, 황복희의원
- 사무보조(의회 직원)
 - 전문위원 신현의, 행정주사 김재한, 행정주사보 도재균,
속기사

라. 교육환경위원회

- 감사위원장 : 정보호 교육환경위원장
- 감사 위원 : 김성하, 권준택, 김선종, 김순견, 김응규,
김준호, 박종욱, 이달, 장미향의원
- 사무보조(의회 직원)
 - 전문위원 김영문, 행정주사 김진원, 행정주사보 정진욱,
속기사

마. 농수산위원회

- 감사위원장 : 이용석 농수산위원장
- 감사 위원 : 정상진, 강영서, 김주연, 박승학, 방유봉,
손규삼, 손만덕, 신영호, 이상효의원
- 사무보조(의회 직원)
 - 전문위원 권승갑, 행정주사 허재원, 행정주사보 고재명,
속기사

바. 산업관광위원회

- 감사위원장 : 채희영 산업관광위원장
- 감사 위원 : 한혜련, 김정기, 김희문, 박두필, 우성호,
이정백, 임원식, 최원병의원
- 사무보조(의회 직원)
 - 전문위원 권오성, 행정주사 박재구, 행정주사보 이완교,
속기사

사. 건설소방위원회

- 감사위원장 : 박영화 건설소방위원장
- 감사 위원 : 장욱, 김기대, 김정자, 안순덕, 윤경희, 이종철,
이현준, 이호근의원
- 사무보조(의회 직원)
 - 전문위원 김이찬, 행정주사 윤홍식, 행정주사보 박찬길,
속기사

4. 위원회별 감사일정 : 별 첨

감사요령 및 협조사항

1. 감사 진행 순서

가. “감사 선언”의 선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기관(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라고 감사선언을 선포함.

※ 감사는 회의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의 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감사 선언을 선포하는 것임.

나. 위원장 인사

- 먼저 “감사 선언”을 한 후에 상임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포함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인사를 하게 됨.
- 의사일정은 “2004년도○○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견”으로 상정

다. 증인 선서

○ 선서의 근거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함.

○ 선서 요령

- 상임위원장의 안내에 따라 해당기관의 기관장 또는 부서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 증인선서(별첨 양식)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서를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듣다.

-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지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음.

○ 증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함.

라. 기관장 인사 및 보고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장은 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 동안의 행정 성과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인사하고 출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해당기관 또는 부서의 감사와 관련한 소관 업무현황과 위원회에서 특별히 요구한 사항을 보고함.

마. 질의 · 답변

-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한 해당기관장과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감사형식인데, 이 경우에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하고 답변을 청취하는 과정이 결국 「질의 · 답변」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 방 법

감사위원들의 질의와 출석증인의 답변시에 질의시간과 진행 방법 (일문일답식 또는 일괄 질의 · 답변식)에 대한 결정은 당해 위원회에서 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제출 요구, 증인의 추가 출석요구나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바. 현지 확인

○ 현지 확인의 의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현장 또는 현지의 상황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 또는 현지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이 현지 확인의 과정이며, 현지 확인 활동은 「검증」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으며, 감사위원 중 일부 위원으로 하여금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할 수도 있음.

○ 현지 확인의 진행순서

현지 확인을 하는데는 정형화된 진행순서는 없으나 대체로

- ① 개회
- ② 위원장 인사
- ③ 감사대상 기관장의 인사 및 보고
- ④ 질의·답변 및 서류제출요구
- ⑤ 제출서류 실태 파악(필요한 서류 봉인)
- ⑥ 위원장 인사 순으로 진행함

사.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 강평의 의의

감사가 사실상 종료하게 되면 위원장은 간단하게 감사진행 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나 당부할 사항 등을 내용으로 강평을 함.

○ 종료 선언

위원장의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이 끝나면 「이상으로 ○○ 기관(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라고 당해 기관의 감사종료와 산회를 선포함

2. 현지확인 협조

가. 감사장 설치

- 현지 확인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로 통보받은 즉시 감사위원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수감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 감사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 건설위원회 수감대상기관(부서)에서는 현지확인시에 설계도, 시방서, 코아 채취기 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 별첨 「좌석 배치도」에 따라 감사위원의 좌석, 전문위원 좌석, 속기사의 속기를 위한 좌석을 배치하되 해당 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나. 속기록 작성 준비

- 속기석은 속기사의 교대가 가능하도록 2개 좌석을 배치하고,
- 속기석에는 속기기록 청취용 「헤드폰」을 설치하고
- 감사장에는 감사과정의 모든 질의·답변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장치와 담당직원을 배치하고,
- 기타 속기사로부터 속기에 필요한 서류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함.

다. 감사장 안내

- 감사장소의 안내는 수감기관의 해당부서에서 담당하여 감사당일의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여야 함.

라. 현지 이동에 따른 차량지원

현지확인을 위해 소요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가능한 의회 자체적으로 조치토록 하겠으나, 자체 해결이 불가능하여 차량 지원을 요청할 경우 수감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행정사무감사사항의 기록 및 홍보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감사를 포함한 위원회별 모든 감사 과정에 대하여 기록하고 보존할 사항과 함께 홍보사항은 관계 부서에서 본 감사계획에 의하여 시행하고, 그외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감기관 등에서 조치.

3. 감사실시 결과보고 협조 - 의회 각 상임위원회 해당사항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아래 내용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04.12.13 (월)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기 바람.

- 감사의 목적, 대상기관(부서)
- 감사실시 결과
-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장소, 방법
- 주요 감사실시 내용(소관별, 사항별)
- 감사결과 처리 의견
- 시정요구사항(잘못된 점 등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
- 처리요구사항(시정은 아니더라도 불합리하여 해당기관이 처리해야 할 사항)
- 건의사항(건의나 희망사항)
- 주요 근거서류(감사결과 증빙서류) - 별첨 요함
- 기타 특기사항

4. 증인출석 요구

가. 증인출석요구 근거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대상 기관장 및 관계공무원과 그 밖에 관계되는 자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출석을 요구

나. 출석대상 증인의 범위

출석증인의 대상은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범위와 함께 해당 감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함.

다. 증인의 출석통지 및 증인 의무

(1) 해당 기관장 및 관계공무원

감사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증인에 대해서는 의회 의장 명의로 출석 해당일 3일전까지 『증인출석요구서』가 증인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

(2) 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출석대상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행정사무감에 협조하여야 함.

라. 증인 출석 불가이유서 제출

의회로부터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과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참석할 수 없는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마. 증인의 보호

증인, 참고인은 증언 또는 진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할 시는 감사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증인출석요구 내역

(1) 의회운영위원회

구 분	출석요구일시	감사대상기관 (출석장소)	출석요구 증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내용
의회운영 감사위원회 (13인)	11.29(월) 15:00	○ 의회사무처 (상임위원회의실)	○ 의회사무처장 ○ 총무담당관 ○ 의사담당관	○ 업무보고 ○ 질의·답변 ○ 자료제출 등

(2) 기획위원회

구 분	출석요구일시	감사대상기관 (출석장소)	출석요구 증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내용
기 획 감사위원회 (9인)	11.22(월) 11:00	○ 포항의료원 (동 의료원)	○ 원장, 부장, 과장	○ 업무보고 ○ 질의·답변 ○ 자료제출 등
	11.23(화) 11:00	○ 김천의료원 (동 의료원)	○ 원장, 부장, 과장	
	11.24(수) 11:00	○ 안동의료원 (동 의료원)	○ 원장, 부장, 과장	
	11.25(목) 11:00	○ 경북개발공사 (동 공사)	○ 사장, 부장, 과장	
	11.26(금) 11:00	○ 공무원교육원 (동 교육원)	○ 원장, 과장	
	11.29(월) 11:00	○ 기획관리실 ○ 공보관실 ○ 감사관실 (상임위원회의실)	○ 실장, 기획관, 담당관 ○ 공보관 ○ 감사관	
	11.30(화)	○ 감사결과 정리		

(3) 행정사회위원회

구 분	출석요구일시	감사대상기관 (출석장소)	출석요구 증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내용
행정사회 감사위원회 (8인)	11.22(월) 11:00	○ 자치행정국 (상임위원회의실)	○ 국장, 과장	○ 업무보고 ○ 질의·답변 ○ 자료제출 등
	11.23(화) 11:00	○ 사회복지여성국 (상임위원회의실)	○ 국장, 과장	〃
	11.24(수) 11:00	○ 자연환경연수원 (동 연수원)	○ 원장	〃
	11.25(목) 11:00	○ 경도대학 (동 대학)	○ 학장, 과장	〃
	11.29(월) 11:00	○ 사회복지시설 (현지확인)		○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답변
	11.30(화) 11:00	○ 지역개발사업 (현지확인)		〃

(4) 교육환경위원회

구 분	출석요구일시	감사대상기관 (출석장소)	출석요구 증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내용
교육환경 감사위원회 (10인)	11.22(월) 11:00	○ 포항,영덕,울진, 울릉교육청 (포항교육청)	○ 교육장	○ 업무보고 ○ 질의·답변 ○ 자료제출 등
	11.23(화) 11:00	○ 영주,청송,영양, 봉화교육청 (영주교육청)	○ 교육장	〃
	11.24(수) 11:00	○ 군위,고령,성주, 칠곡교육청 (칠곡교육청)	○ 교육장	〃
	11.25(목) 11:00	○ 보건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자원종합개 발사업소 팔공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 보건환경연구원 (상임위원회의실)	○ 국장, 과장 ○ 원장, 부장, 지소장	○ 업무보고 ○ 질의 등
	11.26(금) 11:00	○ 보건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자원종합개 발사업소 팔공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 보건환경연구원 (상임위원회의실)	○ 국장, 과장 ○ 원장, 부장, 지소장	○ 질의·답변 등
	11.29(월) 11:00	○ 도교육청(직속 기관 포함) (상임위원회의실)	○ 부교육감,국장, 과장, 직속 기관장	○ 업무보고 ○ 질의 등
	11.30(화) 11:00	○ 도교육청(직속 기관 포함) (상임위원회의실)	○ 부교육감,국장, 과장, 직속 기관장	○ 질의·답변 등

(5) 농수산위원회

구 분	출석요구일시	감사대상기관 (출석장소)	출석요구 증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내용
농 수 산 감사위원회 (10인)	11.22(월) 11:00	○ 농수산국 (상임위원회의실)	○ 국장, 과장, 사업소장 (지소장 포함)	○ 업무보고 ○ 질의·답변 ○ 자료제출 등
	11.23(화) 11:00	○ 가축위생 시험소(본소) (동 사업소)	○ 소장	〃
	11.24(수) 11:00	○ 수산자원개발 연구소 (동 연구소)	○ 소장	〃
	11.25(목) 11:00	○ 농업기술원 (상임위원회의실)	○ 원장, 국장, 과장, 사업소장, 시험장장	〃
	11.26(금) 11:00	○ 성주과채류 시험장 (동 시험장)	○ 장장	〃
	11.29(월) 11:00	○ 농산물원종장 (동 사업장)	○ 장장	〃

(6) 산업관광위원회

구 분	출석요구일시	감사대상기관 (출석장소)	출석요구 증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내용
산업관광 감사위원회 (9인)	11.22(월) 11:00	○ 경제통상실 ○ 문화체육관광국 (상임위원회의실)	○ 국장, 과장	○ 업무보고 ○ 질의·답변 ○ 자료제출 등
	11.23(화) 11:00	○ 경북신용보증 재단 ○ 중소기업지원 센터 (현지)		
	11.24(수) 11:00	○ 경북통상 ○ 문화재연구원 ○ 경북테크노파크 (현지)		”
	11.25(목) 11:00	○ 생활체육협의회 ○ 한국국학진흥원 (현지)		”
	11.29(월) 11:00	○ 경제통상실 ○ 문화체육관광국 (상임위원회의실)	○ 국장, 과장	”

(7) 건설소방위원회

구 분	출석요구일시	감사대상기관 (출석장소)	출석요구 증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내용
건설소방 감사위원회 (9인)	11.22(월) 11:00	○ 상주소방서 (동 소방서) ○ 원흥지구 수해 상습지개선사업 (현지확인)		○ 업무보고 ○ 질의·답변 ○ 자료제출 등
	11.23(화) 10:00	○ 문경소방서 (동 소방서) ○ 가은 우회도로 사업 (현지확인)		〃
	11.24(수) 10:00	○ 안동소방서 (동 소방서) ○ 종합건설사업 소북부지소 (동 지소) ○ 나소도로 확· 포장공사 (현지확인)	○ 지소장	〃
	11.25(목) 11:00	○ 종합건설사업소 (동 사업소)	○ 소장, 지소장	〃
	11.26(금) 11:00	○ 소방본부 (상임위원회의실)	○ 본부장, 과장, 소방학교장, 소방서장	〃
	11.29(월) 11:00	○ 건설도시국 (상임위원회의실)	○ 국장, 과장	〃
	11.30(화)	○ 감사결과 정리 (상임위원회의실)		

선 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 ○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국, 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장으로서 성실 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월 일

기관명 :

○○○장 ○ ○ ○ (인)

의정활동보고서(제192회 임시회)

2004. 11 인쇄 / 2004. 10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139

FAX : 955-9185

〈비매품〉